

송도 대경스위트리아 파크뷰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합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청약자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제출 시 무주택증명서류로 우선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안내문상의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지자체 협의 및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일[‘21.09.16 예정]에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관련 안내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안내 사항 국토교통부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령'에 근거하여 송도대경스위트리아 파크뷰는 사이버 건본주택으로만 운영 (www.송도대경스위트리아파크뷰.com) 합니다.
- 본 사이버 건본주택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시행위탁사 홈페이지 (www.송도대경스위트리아파크뷰.com)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건본주택 관람, 아래에 기재된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건본주택 운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간혹 통화량이 많을 경우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032-832-6665)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 신청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공급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1-34, 35번지
- 공급 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층~10층 1개 동 총 64세대 중 일반공급 24세대, 특별공급 40세대
(일반 [기관추천] 총 7세대 : 국가 유공자:1세대, 장기복무제대군인:1세대,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1세대, 중소기업 근로자:1세대 장애인[인천광역시]:1세대, 장애인[경기도]:1세대, 장애인[서울특별시]:1세대)
- 입주 시기 : 2021년 11월 예정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주택 구분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타입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추천
민영 주택	046.6000	46A	46.6000	17.1799	63.7799	28.3676	92.1475	21.3113	16	2
	052.3980	52B	52.3980	18.0690	70.4670	31.8970	102.3640	23.9629	16	2
	058.0410	58C	58.0410	19.8610	77.9020	35.3323	113.2343	26.5436	16	2
	053.2800	53D	53.2800	17.6898	70.9698	32.4340	103.4038	24.3663	16	1
합계									64	7

2. 분양 일정(예정)

구분	일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년 09월 23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경 스위트리아 파크뷰 홍보관(10~14시)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모바일 : 스마트폰 앱
특별공급 접수 일자	2021년 10월 05일(화)	
당첨자 발표	2021년 10월 14일 (목)	

3. 신청대상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1.09.23.[예정])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 자격 요건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국가 유공자 보훈 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 제공자 제외.

4.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인천광역시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청 복지국 복지사업과, 서울특별시청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 자립지원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 유공자 등 : 국가보훈처 인천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행정지원 조정협력과

5.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6. 유의사항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 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미 신청 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 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 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 주체 및 전산 관리 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기타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7. 문의처

- 기관추천 관련문의
국가 유공자 및 장기복무제대군인 ☎ 032-588-4173
10년 이상 복무군인 ☎ 02-2225-6378
인천시청 복지국 장애인 복지과 ☎ 032-440-5014
경기도청 복지국 복지사업과 ☎ 032-8008-4324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지원과 ☎ 02-2133-7462
- 무주택 관련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청약 요건 관련문의 : 한국감정원 청약홈 ☎ 1644-7445
- 주택 분양 관련문의 : 주택홍보관 ☎ 032-832-6665

송도 대경 스위트리아 파크뷰 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안내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 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으로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청약자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로 처리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제출 시 무주택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 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 되면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나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 2 에 따라 해당하면 신청 가능)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 체결 이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안내문 상의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지자체 협의 및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일[21.09.23 예정]에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관련 안내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안내 사항 국토교통부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주택 홍보 관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송도 대경 스위트리아 파크뷰는 사이버 견본주택으로만 운영 (www.송도대경스위트리아파크뷰.com) 합니다.
- 본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일정, 청약 안내, 상품안내 등 시행 위탁사 홈페이지 (www.송도대경스위트리아파크뷰.com)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 홍보관 관람 아래에 기재된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을 시행할 예정이오니 간혹 통화량이 많을 경우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032-832-6665)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 신청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공급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1-34, 35번지
- 공급 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층~10층 1개 동 총 64세대 중 일반공급 24세대, 특별공급 40세대 중 경제자유구역 7세대
- 입주 시기 : 2021년 11월 예정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주택 구분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타입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 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 지분	총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 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경제자유구역청
민영 주택	046.6000	46A	46.6000	17.1799	63.7799	28.3676	92.1475	21.3113	16	2
	052.3980	52B	52.3980	18.0690	70.4670	31.8970	102.3640	23.9629	16	2
	058.0410	58C	58.0410	19.8610	77.9020	35.3323	113.2343	26.5436	16	2
	053.2800	53D	53.2800	17.6898	70.9698	32.4340	103.4038	24.3663	16	1
	합계									64

2. 분양 일정(예정)

구분	일정	비고
특별공급 사전 접수일	2021년 9월 27일 ~ 9월 29일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년 09월 23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도 대경 스위트리아 파크뷰 주택 홍보관(10~14시)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모바일 : 스마트폰 앱
특별공급 접수 일자	2021년 10월 05일(화)	
당첨자 발표	2021년 10월 14일	
서류접수일	2021년 10월 16일 ~ 2021년 10월 19일	
계약 체결일	2021년 10월 23일 ~ 2021년 10월 26일	

3. 신청 자격 및 요건

■ 신청 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 기준”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무주택 가구 구성원 (외국인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해당 기업 또는 기관에 1년 이상 종사하는 자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가구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청약 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금액이 85㎡ 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 인정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구분	인천광역시 (또는 기타 광역시)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광역시)	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 원	600만 원	300만 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 원	1,0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00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

-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약부금(전용면적 85㎡ 이상 신청 시) 또는 청약 저축 통장으로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이전까지 청약 예금통장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시 기존 통장으로 재변경이 불가합니다.
- ※ 가입 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등 신청 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 ※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서 수행합니다.
- ※ 해당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공급하고, 이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모두를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무 주택 세대 구성원의 의미

<p>○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 3 및 제4호)</p> <p>가. 주택공급신청자</p> <p>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p> <p>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p> <p>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p> <p>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p>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해당 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따라 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 권 및 입주권 (이하“분양권 등”)은 주택 수에 포함 (단, 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각호에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함.)
3.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주택 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다음에 해당할 때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관명되어 사업 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가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된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 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 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 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9. 소형·저가 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4. 대상자 선정 방법

1.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먼저 사업 주체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 주체는 특별공급 신청자 현황을 작성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확정자나 예비자가 선정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 주체에 대상자를 통보하므로 사업 주체나 전산 관리 지정 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종사자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제8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가점제 적용기준 나목을 적용합니다. 본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름.
3.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은 사업 주체에 통보된 자만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대상자(당첨확정자나 예비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접수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 (청약 미신청 시 계약 불가)
4.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5. 사업 주체는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홈페이지에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까지 게시하고, 특별공급 대상자나 탈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그 선정 결과를 통보함.

5. 특별공급 사전접수 구비서류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을 사전접수 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 중 관계되는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사업 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			
공통	0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부	재직회사	재직회사 발급(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0		사업자등록증 1부	재직회사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0		재직 증명서 1부	재직회사	소속 업체인감 날인된 재직 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재직기간 명시(필수)
	0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본인	소속 업체인감 날인된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년 이상기준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0		주택 특별 공급신청서	-	소속 업체인감 날인 제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당사 홈페이지 고시문/안내문 참고)
	0		무주택 서약서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당사 홈페이지 고시문/안내문 참고)
	0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본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당사 홈페이지 고시문/안내문 참고)
	0		청약통장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인	이름, 청약예치금 및 청약통장 가입일 및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한국부동산원 → 청약통장 가입내역 → 인쇄/이용 시간 08:00~17:30) ※모집공고일 기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가능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팩스 또는 인터넷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발급)	
내국인	0		신분증 사본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본인	본인 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용도:주택공급신청용)
	0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 시 서명]	본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가능 ※특별공급 신청서, 무주택 서약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날인 필수
	0		주민등록(표)등본 1부	본인	본인이나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0	0	주민등록(표)등본 1부	배우자 (분리세대)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되었으면 제출, 본인이나 세대원 주민등록 전체 포함, 세대구성 및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0		주민등록(표)초본 1부	본인	본인이나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0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주민등록번호 및 세대원 전체 포함 (상세 발급)
	0	0	기타	-	추후 동점자 발생하여 사업 주체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직계비속의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외국인	0		외국인등록증	본인	외국인은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
	0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	본인	재외동포 신청의 경우는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
법인	0		법인인감증명서 1부	재직회사	법인 신청의 경우 제출
	0		법인 등기부 등본	재직회사	

※ 상기 모든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까지 발행분 (세대 구성원 변동 시 변동된 날 기준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신청자의 착오 및 미기재, 서류 위·변조 등으로 인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제외, 청약 신청분의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 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 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 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 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무주택 서약서, 개인 정보수집·활용동의서는 당사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 붙임 : 1.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2. 무주택 서약서 3. 개인 정보수집·활용동의서

6. 유의사항

- 특별공급 서류접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152번길 35 퍼스트프라자 106호(1층) 송도 대경 스위트리아 주택 홍보관에서 진행되며, 해당 기간 내 서류 미접수 및 서류 미비 대상자는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특별공급 사전접수는 해당 기간 내 현장 접수만 인정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의 경우 '인천 경제자유구역' 외 다른 지역에서 근무한 기간은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청약 자격 확인 결과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신청한 경우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해당하는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구비서류 중 재직회사 서류의 경우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 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 이후 사업 주체에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격자로 판명된 분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청약 신청 자격에 대한 심사 후 주택 소유 사실 등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면 당첨자로서의 모든 권리가 소멸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1, 2순위)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 청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서류는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 구성원 모두 접수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경제자유구역,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청약 신청은 1세대 1건만 가능하므로 중복으로 청약하는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되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의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당첨확정자, 예비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선정된 타입 외 다른 타입 청약 시 당첨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2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 기준」 제12조에 따라 자격을 잃는 경우 (전매제한 기간 내 전출 또는 퇴직,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 사실, 주택 소유 사실 은닉 등) 공급받은 주택은 계약취소가 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사업 주체에서 재공급하게 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자격요건 확인 시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서류 (인사기록 카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서류 미제출 시 특별공급 대상자

예시 1) 종전 근무 기업의 근무 기간 합산 불가로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
: 외국인 투자 (A) 기업에서 6개월간 근무하고, 현재 외국인 투자 (B) 기업 10개월 근무 → (B) 기업 근무 기간만 인정

예시 2) 다른 지역의 지사로 발령받은 근무자 신청 불가로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
: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위치한 외국인 투자 (A) 기업에서 5년간 근무하고 있으나, 1년 이내에 다른 지역, 지사(인천 경제자유구역 외 지역)로 발령받아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 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관계 법령과 상이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 본 안내문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 사항

주택 홍보관 : ☎ 032-832-6665

홈페이지 주소 : www.송도대경스위트리아파크뷰.com

현장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1-34, 35번지

주택 홍보관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152번길 35 퍼스트프라자 106호(1층)

송도 대경 스위트리아 파크뷰 현장 및 홍보관 위치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1. 신청인 인적 사항 및 소속 업체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 신고 번호	-
주소			
연락처	주택 : () - , 휴대폰 : -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근무부서		직책 및 직위	
소재지주소			☎() -
근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2. 가족 사항(본인, 배우자 등 세대원구성 전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 신고 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 신고 번호

※ 가족 수가 많은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함.

3. 주택 특별공급 신청내역

구역 및 지구	위 치	신청주택형	비 고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 지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1-34, 35번지	46A□ 52B□ 58C□ 53D□	분양[✓]

4. 첨부서류

공통서류	내국인	외국인
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2. 사업자등록증 ()		
3. 법인인감증명서(법인신청인 경우) ()	1. 신분증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신청인 경우) ()	2. 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5. 재직 증명서 ()	3. 인감도장(또는 본인 서명) ()	1. 외국인등록증 ()
6.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4. 주민등록표 등본(본인) ()	2. 국내거소 신고 사실 확인서 ()
7. 특별공급신청서 ()	5. 주민등록표 등본 () (배우자, 단 세대 분리된 경우에 한함)	
8. 무주택 서약서 ()	6. 주민등록표 초본(본인) ()	
9. 청약통장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7. 가족관계증명서 ()	
10. 경제자유구역 내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해당 사항에 괄호 안에 “0”로 표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 기준」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인

(인)

위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 기준」 제4조 규정에 의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소속 업체 :

(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무주택 서약서

신청아파트	송도 대경 스위트리아 파크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1-34, 35번지)		
성명	(인)	신청주택형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상기 본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의 주택 소유현황 및 과거 당첨 사실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향후 주택 소유현황 등 전산 검색 결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 취소(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다른 분양주택 청약 제한) 및 동·호 배정을 받더라도 계약 체결 불가 등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내용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1.09.23. 예정)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 소형 저가 주택은 일반공급에서 해당하며 특별공급 신청 시 유주택임 ※ 2018.12.11. 이후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취득도 유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름 (특별공급 안내문 참조)	(인)
- 과거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	(인)

년 월 일

상기 서약서상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본인 신청 시 신청인 : _____(인)

대리 신청 시 대리인 : _____(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